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 / 35

개인정보관리규정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관리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리본 <input type="checkbox"/> 비관리본		
결 재	승인	이준호	
	검토	박성주	
	작성	류복수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 / 35

개정이력				
개정번호	제개정일자	개정전후비교		제개정사유
		개정전 (~을)	개정후 (~으로)	
0	2023.06.20	-	-	제정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3 / 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보호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신기테크(이하 "회사"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4 / 35

말한다.

6.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7.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제7호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 본 규정에서는 "회사"로 한다.
12. "개인정보유출"이란 법령, 이 규정,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5 / 35

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라.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1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본 규정에서는 "회사"로 한다.

1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5.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며, 본 규정에서는 "회사"로 한다.

17.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분야별책임자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9. "분야별책임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6 / 35

20.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안전성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

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7 / 35

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는 임직원(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며, 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제6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각 부서의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8 / 35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9 / 35

③ 회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회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세칙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0 / 35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회사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제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정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1 / 35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회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2 / 35

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기준 및 절차 및 ,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규정 시행지침」으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0.00.>

제11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회사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회사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3 / 35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사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회사는 이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4 / 35

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④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회사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5 / 35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5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회사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7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규정 시행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0.00.>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6 / 35

제17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규정 시행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0.00.>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7 / 35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7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영상정보의 처리, 열람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8 / 35

제1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회사(이하 본 조에서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 기준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9 / 35

⑧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 및 본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⑨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까지,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제20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양도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0 / 35

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

제22조(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회사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회사가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가명정보 또는 제48조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회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1 / 35

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제26조(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33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7조(안전조치의무)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2 / 35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과 제30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회사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기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기재사항, 공개 및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3 / 35

제2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4 / 35

⑦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외에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각 담당자의 지정, 업무 범위,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회사는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3.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회사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5 / 35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영향 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파일의 운영실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의 계획 및 시행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6 / 35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시행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유출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4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7 / 35

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4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회사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8 / 35

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와 제30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9 / 35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4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6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43조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30 / 35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 등

제3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회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31 / 35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이 정한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회사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32 / 35

제41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42조(개인정보의 파기의 특례) ① 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회사는 제15조, 제39조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9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33 / 35

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회사는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회사는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34 / 35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④ 회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6장 기타

제48조(적용제외) 이 규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신기테크	ESG경영	문서번호	SKT-ESG-002
		제정일자	2023.06.20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35 / 35

제5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회사 대표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06.20. 부로 제정 시행하며, 3년 내 개정 검토한다.